

제 8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47조【계약목적】

1.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48조【계약기간】

1.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 49조【계약의 사항】

1. 입소보호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이용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2. 입소 및 이용계약은 입소자나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소자 또는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 50조【입소비용 및 기타 부담액】

1. 입소비용의 기준은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 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2. 입소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계산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비급여비용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① 식재료비
 - ② 개인 약제비 및 의료비
 - ③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4.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월 입소비용은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입소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간병·수발 등의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7. 입소비용 산정액은【별표6】과 같다.

제 51조【비용의 청구】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이용비용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된다.
3.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의거하여 해당 연도수가를 적용한다.

제 52조【비용의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53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① 시설의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②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③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④ 수급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⑤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⑥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⑦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 ⑧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⑨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⑩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수급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 ⑤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54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거주자 일상생활기록지, 상담기록, 경위서, 입·퇴소 평가서 등)를 첨부한다.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5.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55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9장 입소비용 등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56조【입소비용 등 변경방법】

1. 시설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 도래 전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 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 ④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즉시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입소비용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시설장 또는 운영위원회 등의 요청에 의하여 발의되며, 운영위원회에서 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7조【입소비용 변경 절차】

1.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③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별표5. 입소비용 산정액】

장기요양보험 수가 (2023년 1월부터 적용)					
구 분			노인요양시설(개정법)		
등 급			1	2	3,4,5
1일 입소비용			81,750	75,840	71,620
본인 부담금	30일	일반	490,500	455,040	429,720
	31일	일반	506,850	470,210	444,040
납부 금액	30일	일반	790,500	755,040	729,720
		경감(8%)	496,200	482,020	471,890
		경감(12%)	594,300	573,020	557,830
	31일	일반	806,850	770,210	744,040
		경감(8%)	502,740	488,080	477,620
		경감(12%)	604,110	582,120	566,430

① 약제비, 병원비, 건강검진 비용은 별도 청구

② 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3,000원*3식*30일=270,000원/간식비 1일 1,000원 총 300,000원